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8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72-86-0084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3층		
	대표자 류금선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주요내용)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p>○ (특례내용)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p> <p>○ (실증범위) 1·2단계는 신청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 3단계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확대</p> <p style="padding-left: 20px;">* △1단계 5대/10명(2교대), △2단계 100대/200명(2교대), △3단계 500대/1000명(n교대)</p> <p>○ (부가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p>① 차고지 밖 근무교대는 가맹택시에 한정</p> <p>② 당일 수납 준수</p> <p>③ 도로 교통, 주민 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적(2면 이상, 30m2내외)의 별도 교대지 확보</p> <p>④ 운수종사자 음주 시 차량 운행 금지</p> <p>⑤ 본인 음주측정 시 위반조를 방지(실시간 동영상 촬영 후 전송하는 방식 등) 하여야 하고,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함</p> <p>⑥ 향후 지역제한 등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후 진행</p>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8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KM솔루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22-87-00998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1002호		
	대표자 류금선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주요내용)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1·2단계는 신청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 3단계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5대/10명(2교대), △2단계 100대/200명(2교대), △3단계 500대/1000명(n교대) ○ (부가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고지 밖 근무교대는 가맹택시에 한정 당일 수납 준수 도로 교통, 주민 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적(2면 이상, 30m2내외)의 별도 교대지 확보 운수종사자 음주 시 차량 운행 금지 본인 음주측정 시 위반조를 방지(실시간 동영상 촬영 후 전송하는 방식 등) 하여야 하고,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함 향후 지역제한 등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후 진행 </div>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9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KST모빌리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3-88-00799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13층(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대표자 이행열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주요내용)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 플랫폼(마카롱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5대/10명(2교대), △2단계 100대/200명(2교대), △3단계 500대/1000명(n교대) ○ (부가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고지 밖 근무교대는 가맹택시에 한정 당일 수납 준수 도로 교통, 주민 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면적(2면 이상, 30m2내외)의 별도 교대지 확보 운수종사자 음주 시 차량 운행 금지 본인 음주측정 시 위반조를 방지(실시간 동영상 촬영 후 전송하는 방식 등) 하여야 하고, 기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함 향후 지역제한 등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후 진행 </div>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0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KM솔루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22-87-00998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1002호		
	대표자 류금선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주요내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이하 구직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최대 3개월 유효),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영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KM솔루션이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200명에게 택시운전 임시 자격 부여,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 ○ (조건) 다음의 '부가 조건' 준수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를 등록해야하며,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종사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운행 불가 ② 3개월* 내 택시운전자격증을 정식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취소 * 제한 기간은 택시자격시험 여건 등을 고려한 국토부 내부 심사를 통해 변경 가능 ③ 임시 택시 운전자격 부여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부여 ④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표 대신 브랜드 택시 교육을 이수한 해당 브랜드택시의 운수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⑤ 가맹 택시에 한정하여 특례 적용 ⑥ 임시택시기사에 대하여 고용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1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KST모빌리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3-88-00799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13층(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대표자 이행열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주요내용) 서울 지역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내용)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 운영 ○ (조건) 불임의 '부가 조건' 준수 필요 		
	<p>「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p>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부가 조건 >

< 탄력요금에 대한 부가 조건 >

- ① 모범택시와 고급택시의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 수취
- ② 가맹택시의 호출영업에서만 적용
- ③ 승객 탑승 및 결제 이전에 요금의 사전 고지
- ④ 향후 지역 제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 단거리 합승관련 부가 조건 >

- ① 가맹택시의 호출영업에서만 적용
- ② 승객 탑승 및 결제 이전에 요금의 사전 고지
- ③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 △동성만 매칭,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 가입 등
- ④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 노쇼(No-Show), 임의 하차, 당초 목적지 변경, 승차예정위치 부재 등의 상황발생시 합리적 요금징수, 운송서비스 제공 방안 등
- ⑤ 향후 지역, 시간, 합승 제한거리, 요금 할인율 등 특례 사항에 대해 완화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2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워프솔루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46-88-00329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56 BY센터 12층		
	대표자 이경학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주요내용)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원거리에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제품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p>○ (특례내용) 워프솔루션이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①전문시험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활용)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②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p> <p>○ (실증범위) ①전문시험기관(최적 주파수 시험, 혼간섭 확인), ②서울 소재 오피스(실사용 환경 시험)* * SKT 5G 스마트오피스(서울 종로), KDDI Korea 오피스(서울 종로) 등 내부</p> <p>○ (조건) 워프솔루션은 다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 조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900MHz 대역 이동통신 무선국 등에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해 RFID 기술기준 요건에 준하는 수준을 만족할 것 ②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폐 시설 내에서 간섭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것 ③ 제품 실증 시 과기정통부, 900MHz 대역 기존 이용자와 협의 후 진행할 것 ④ 추가 용도분배 등 주파수 수요제출은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접수창구를 이용할 것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0-13호	지정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식회사 칠링키친	110111-6098720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75, 양천구청년창업허브 3호		
	대표자		
	합현근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주요내용)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 및 반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어공유하는 서비스(공유주방) 및 푸드트럭 사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전처리 및 반조리 후, 푸드트럭에서 최종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 (특례내용) 칠링키친이 '푸드트럭을 위한 공유주방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①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음식판매자동차)이 아닌 별도의 주방에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1개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요건 ○ (실증범위) '칠링키친 광명점'에 한정 ○ (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 부가 조건 > ○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운영자는 반조리 식품 출고 시 출고일시, 제품명, 출고량, 사용 장소(푸드트럭 영업장소) 기록·관리 ○ 식품의 부패변질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조리 식품은 전량 냉장(또는 냉동)보관 하고 반출 시 표시* 부착 * (표시내용) 제품명, 내용량, 조리(제조)일자, 사용기한, 보관방법 ○ 이용자는 서울·경기도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동 시간대 최대 주방 이용자는 5팀(10명)으로 제한 ※ 다만, 실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범위 및 최대 주방 이용자를 식약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5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식회사 스테이지파이브	756-86-00029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 향군타워 6층	
	대표자		
	서상원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KT·알뜰폰) 채널을 이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책임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 본인확인 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5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케이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2-81-4294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자 구현모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KT·알뜰폰) 채널을 이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책임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 본인확인 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5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27-88-00686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2층(백현동, 알파돔타워)		
	대표자 류영준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KT·알뜰폰) 채널을 이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책임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 본인확인 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6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케이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2-81-4294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자 구현모		
	명칭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주요내용 ①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②계좌인증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책임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2020-7호	임시허가 연월일	2020년 7월 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KST모빌리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3-88-00799
	주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3층		
	대표자 이행열		
	명칭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주요내용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KST모빌리티 가맹택시(마카롱택시)에 적용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임시허가조건	○ KST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마카롱택시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며, 마카롱택시(중형 및 준중형(전기차모델))에 적용 ○ (조건) ‘앱미터기 검정기준(안)’에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확인 후 사업 개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붙임1 애플리케이션 검정기준(안)

< 애플리케이션 검정기준(안) ('20.6월 기준) >

※ 실시허가 조건

1. 애플리케이션은 원칙적으로 호출영업에만 사용한다. 다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신용카드 결제기와 연동된 경우에는 배회영업에서 사용 할 수 있다.
2. 애플리케이션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정상동작을 보증하는 조건(단말기, OS, 설치환경 등)하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실시허가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택시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전기식미터기 장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택시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하 TIMS라 한다) 표준 통신규약에 따라 TIMS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차량은 이 조건을 만족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민원발생 등 검정을 위해 필요한 사유로 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구시에는 TIMS 표준 통신규약에 따른 데이터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GPS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애플리케이션”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뜻

이 기준에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후횟수
기본요금 이후에 요금이 변경된 횟수를 말한다.
- (2) 한계속도
거리에 의해 요금값이 변경되는 상태 또는 시간에 의해 요금값이 변경되는 속도점을 말한다.
- (3) TIMS(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4) TIMS 통신규약
애플리케이션과 TIMS 수집서버 간의 데이터 송수신 규약을 말한다.
- (5) 시험영업
자기 인증을 위한 운행으로, 지정된 경로에 대하여 지정된 영업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요금을 산정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애플리케이션 검정종류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

3.1 애플리케이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작검정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상시검정을 받아 판정결과를 유지해야 한다.

종류	적용항목	방법	시기
제작검정	(가)기능(4) (나)표기 및 표시(5)	신청체계 및 자기인증 검사 방법에 따라 전수검사	애플리케이션 제작시
상시검정	(가)기능(4)	상시 검사방법에 따라 검정	제작검정이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미터에 대해 상시로 시행

3.2 애플리케이션 제작검정을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정한다.

- 3.2.1 각 기능에 대한 기능 설명서, 시험 시나리오, 시험 케이스, 시험 결과서(한국정보화진흥원(NIA) SW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의 “2.10 통합시험 시나리오”, “2.11 단위시험 케이스”, “3.2 단위시험 결과서, 4.1 통합시험 결과서”의 양식을 따름), 결과보고서
- 3.2.2 각 표기 및 표시에 대한 개발결과보고서
- 3.2.3 각 주행코스별(영업)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1초 단위로 구분된 좌표, 좌표보정여부, 요금계산관련 이벤트 발생 여부(예, 한계속도 초과, 할증 등), 요금계산 오차 보정여부가 표기된 CSV 형태의 데이터파일
- 3.2.4 CSV 파일에 표기된 1초단위 데이터 중 좌표보정, 요금이벤트, 요금계산 오차 보정 각각에 대한 사유, 계산식, 계산결과, 기타 설명이 포함된 데이터 설명파일

4. 애플리케이션 기능

- 4.1 영업상태 변경 기능
빈차, 주행, 대기, 호출 등 영업상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4.2 요금계산 기능
 - 4.2.1 할증(할인을 포함한다), 지불 및 합계(합산) 등의 요금계산 기능이 있어야 한다.
 - 4.2.2 시간·거리 상호 병산 기능은, 한계속도(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하에서는 시간을 기반으로 연산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 시에는 거리를 기반으로 연산해야 한다.
 - 4.2.3 시간·거리 제한적 동시 병산 기능은, 한계속도이하에서는 시간·거리를 기반으로 연산해야 하며, 한계속도 초과 시에는 거리를 기반으로 연산해야 한다.

4.2.4 실차주행상태에서 앱미터가 구동되는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 후 재 공급될 경우 차단시점의 요금 및 GPS 정보와 재공급시점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보정을 통해 요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4.2.5 각 지자체의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6 터널 등의 GPS 음영구간과 같이 GPS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과 비정상적인 위치를 정상적인 범위 내의 위치로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 기능을 통해 요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4.3 영수증 기능

앱미터는 영수증과 관련된 정보(승차거리, 요금 등)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승객요청 시 별도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4 운전자 및 사용차량 인증기능

4.4.1 앱미터에 택시운전자자격증 번호,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받아야하며, 앱미터 사용자의 자격이 유효하고 자동차 정상등록이 확인된 경우에만 앱미터 사용이 가능하다.

4.4.2 앱미터 구동 전 별도의 인증기능을 통해 실제운전자를 검증하여야 한다.

4.5 데이터 송·수신 기능

앱미터는 “TIMS-앱미터기 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 및 처리해야 한다.

4.6 업데이트 기능

4.6.1 인증된 배포시스템을 통해 앱미터가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업데이트 정보가 배포되었을 경우 업데이트 실행 후 앱미터가 동작하도록 해야 한다.

4.6.2 TIMS의 통신규약 변경, 요금체계 변경 등 앱미터 기능 변경 사항 발생시 인증된 배포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한다.

4.6.3 앱미터의 업데이트 여부 등 활성화된 각 앱미터의 버전 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

5. 표기 및 표시

5.1 앱미터에서 표출되는 정보는 다음에 따른다.

5.1.1 앱미터 정보는 오인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5.1.2 앱미터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5.1.3 승객 탑승 후 앱미터를 이용해 계산한 요금 수치는 승객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요금 수치의 변경 주기가 최대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4 표시된 요금의 변경 주기가 최대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영구간에서 요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음영구간을 벗어난 뒤 요금 변동이 있을 것임을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5.2 앱미터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5.2.1 앱 버전, 앱 배포일시

5.2.2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5.2.3 소비자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5.2.4 앱미터의 정상동작을 보증하는 조건(단말, OS, 설치환경 등)

6. 검사

6.1 검사항목

6.1.1 앱미터의 검사는 기능, 표기 및 표시에 대해서 실시하며 4, 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요금계산기능 검사

6.2.1 기본요금 검사

기본요금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GPS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 거리를 계산하고 누적된 거리가 기본요금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4%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2 시간요금 검사

시간요금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GPS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 시간을 계산하고 누적된 시간이 시간요금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2%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3 거리요금 검사

거리요금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GPS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간 거리를 계산하고 누적된 거리가 거리요금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0~4%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2.4 시간거리 병산요금 검사

완전 동시병산의 경우 6.2.2, 6.2.3 검사방법을 모두 적용하고, 이외 병산의 경우 적용 조건에 따라 6.2.2, 6.2.3 중 해당하는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6.2.5 할증요금 검사

할증요금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시간 또는 구간에서 할증요금을 기반으로 6.2.1, 6.2.2, 6.2.3, 6.2.4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6.3 자기인증 검사조건

6.3.1 자동차는 터널 또는 지하차도를 1회 이상 통과해야하고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최소 7km이상의 코스를 주행하여야 한다.

6.3.2 자동차는 검정이 완료되어 봉인된 전기식 택시미터를 부착한 차량

이어야 하며 TIMS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6.4 자기인증 검사방법

- 6.4.1 주행검사 대상 차량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시험 차량으로 등록 및 승인 요청한다.
- 6.4.2 앱미터 자기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에 앱미터를 부착하고 [별첨1]과 [별첨2]에 따라 시험영업 하여야 한다.
- 6.4.3 시험영업은 기본요금과 최종요금의 허용차 검사를 6.2에 따라 실시하고 각 요금부과시점의 요금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 6.4.4 시험영업의 거리오차는 총주행거리와 [별첨1]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시하고 그 오차는 -2~2% 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 6.4.5 각 시험영업별로 세 건 이상의 요금산정 세부내역을 3.2에 따라 검정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요청한다. 단, 제출할 시험영업결과는 자기인증 신청 직전 7일 이내의 시험영업으로 제한한다.

6.5 상시 검사조건

- 6.5.1 검사대상 앱미터는 기초자치단체 및 앱미터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6.5.2 검사 정보는 호출요금 및 기타요금이 제외된 승차요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6.6 상시 검사방법

- 6.6.1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앱미터 검증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인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 6.6.2 검사용 영업데이터는 앱미터 종류 및 지역별로 구분하고 최근 1개월 기간의 영업 중에서 랜덤하게 추출하며, 데이터 건수는 아래 수식에 따른다.(단, 민원이 발생한 앱미터의 경우는 전수 검증이 가능하다.)
데이터 건수 = 200건 * (앱미터 수량 / 부제)
- 6.6.3 적용한 요금체계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최종요금의 허용차 검사를 실시하고 각 요금부과시점에 요금부과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 6.6.4 허용차 검증은 6.2를 따르며, 요금부과 기준은 지자체별 택시요금 체계를 따른다.
- 6.6.5 추출된 각 영업에 대해 6.6.3부터 6.6.4의 과정을 반복 실시한다.

붙임2 앱미터 검정기준(안) 별첨

[별첨1] 앱미터 자기인증용 영업(복합 요금계산)

복합 요금계산용 자기인증 영업은 표와 같이 총 5건의 영업(주행코스 및 시간)으로만 구성된다.

주행경로는 시내주행경로(A)와 시계외주행경로(B) 두 종류로 구성되며 각 주행은 주의사항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한다.

no	영업시작시각	주행코스	할증종류	주의사항
1	00:05~03:00	A	심야	2번 영업시작시각 전에 종료되어야 함
2	03:50~05:00	A	심야	주행 중 심야할증이 종료되는 시각이 포함되어야 함
3	06:00~23:00	A	-	영업시작/종료시각은 심야 할증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06:00~23:00	B	시계외	
5	23:50~01:00	B	심야,시계외	주행 중 심야할증이 시작되는 시각이 포함되어야 함

A. 시내주행경로 (주행시간 약31분, 주행거리 약13.971km)

경로 URL : <http://naver.me/xZmeGEC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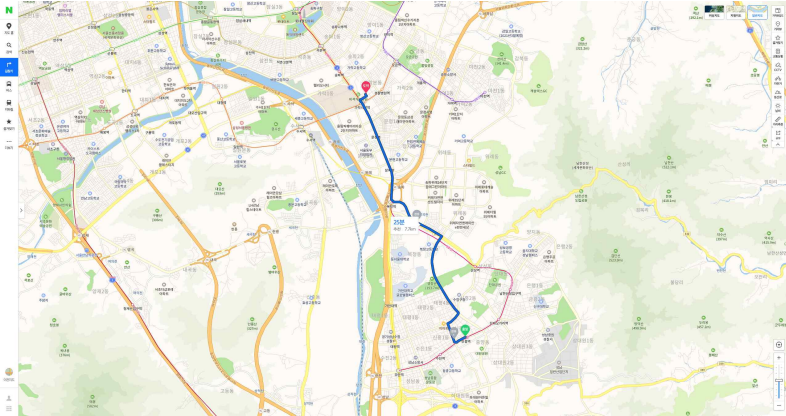
- 출발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로 263
- 경유지 : 야탑동경로당
- 경유지 : 통로골
- 경유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80-2
- 도착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3-21



B. 시계의주행경로 (주행시간 약22분, 주행거리 약7.718km)

경로 URL : <http://naver.me/5w5DFQsw>

- 출발지 : 신흥역3번출구
- 경유지 : 성산씨티타워입구
- 경유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99-222
- 도착지 : 가락2 공원 주차장



[별첨2] 앱미터 자기인증용 영업(시간기반 요금계산)

시간 요금계산용 자기인증 영업은 차량 주차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600초 후 영업을 종료 한다.

차량의 위치 이동은 없어야 하고 영업시작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영업은 3회 시행한다.